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0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균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14.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소649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1) 피고는 의료사고 상담 지원 및 의료사고 줄이기 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C단체의 대표자이다.
- 2) 피고의 명함에는 업무분야로 ‘의료사고 전문상담, 진료기록 번역/분석/감정’ 등이, 부설기관으로 ‘의료사고상담센터, 진료기록분석센터’ 등이 기재되어 있고, ‘후원계좌’로 C단체 명의의 계좌번호와 ‘결제계좌’로 D분석센터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3) 원고의 동생 E는 2018년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부신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병원 측과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이하 ‘관련 의료소송’이라 한다).
- 4)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 F은 2018. 12. 6. C단체가 주최하는 G 행사에 참석하였다. 같은 날 F은 C단체에 150만 원을 후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후원(기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E의 의무기록 사본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5) C단체 명의 계좌에 2018. 12. 11. 원고의 이름으로 150만 원이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 6) 피고는 2019년 1월 및 2월경 원고에게 관련 의료소송에 관한 상담문자를 보냈고, 그 후 원고에게 17쪽 분량의 진료기록분석자료와 4쪽 분량의 진료감정질의서를 제공하였다.
- 7) 원고는 2019. 3. 6. 및 3. 7. 피고에게 진료기록분석이 미흡하다고 항의하였고 2019. 5. 30.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기록분석비 150만 원을 C단체에 기부금 형식으로 납부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관련 의료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만약 원고가 관련 의료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납부한 위 1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C단체에 기부금 형식으로 15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석

자료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관련 의료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후원금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의료기록분석비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위 인정근거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구체적 경위, 이 사건 금원 수수의 형식,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에는 의료기록분석비와 후원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146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원이 의료기록분석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가 제공한 분석 자료가 당초 피고가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제공한 분석 자료가 당초 피고가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원고가 관련 의료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장욱, 판사 이현주, 판사 구민경